

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운영감사 －

2017. 6.

감 사 원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II .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6
(1) 전략물자 불법 수출행위 관련 행정처분 등 부적정(통보).....	7
(2)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부적정(통보).....	13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및 관리업무 부적정(시정·주의·통보).....	20
(4) 비관세장벽 과제 선정 및 관리 부적정(통보).....	28
(5) 정책연구용역 계약 및 관리 불철저(주의).....	32
(6)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불철저(주의).....	39
(7) 부서장급 직위 운영 및 정·현원 관리 등 인사운영 부적정(통보).....	43
(8) 특근매식비 집행 불철저(주의).....	58
(9)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불철저(주의).....	51
(10)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액기술료 징수 부적정(주의2).....	6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지식경제부 업무(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및 자원·에너지에 관한 업무)에 통상교섭 및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신설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FTA 체결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태양광 투자확대 등) 및 기술 융·복합(지능형 로봇 시범공장 구축 등)을 통한 주력산업 개편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경쟁력 저하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조직·예산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산업육성·통상대책·에너지 등 주요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조직·인사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3. 2.~3. 8.)를 거쳐 2017. 3. 1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7. 3. 31.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6. 22.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¹⁾

1. 조직 및 인력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2차관, 1차관보, 6실, 2국, 18관, 2단, 77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²⁾은 무역위원회 등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부 859명과 소속기관 426명³⁾ 등 총 1,285명이다.

2. 세입·세출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세입은 [표]와 같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산수입 증가 등의 사유로 2016년 대비 8,692억 원(6.1%) 증가한 15조 1,679억 원이고, 2017년 세출은 에너지신산업 투자 사업 등이 증가하고 지역산업 거점기관 육성 사업 등이 감소하여 2016년 대비 3,596억 원(△4.7%) 줄어든 7조 2,254억 원이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입 및 세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A)	2017년(B)	증감액(B-A)	증감률
세입	142,987	151,679	8,692	6.1
세출	75,850	72,254	△3,596	△4.7
■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개 ¹⁾)	57,240	53,703	△3,537	△6.2
■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외 2개 ²⁾)	18,610	18,551	△59	△0.3

주: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2.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2)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3) 무역위원회 46명, 전기위원회 9명, 국가기술표준원 220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 76명, 광업등록사무소 26명, 광산보안사무소 32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7명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건, 백만원)

구분	합계	시정 (금액)	주의	통보
건수	13	1 (7,000)	7	5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산업육성·통상대책·에너지 등 주요 사업 추진 분야

- ①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자에게 수출입 금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면서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채 내부지침만으로 운용하고 있고, 동일한 처분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서로 다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의 감경·가중 요인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배제
- ②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는 당초 총괄원가에 반영된 예상 공급설비 투자비가 실제 도 시가스 공급설비 굴착 불허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총괄원가가 172억여 원 상당 과다 산정, 수요자는 같은 금액만큼 추가 부담
- ③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보조금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조금 환수 등 미조치
- ④ 통관, 표준·인증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응활동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도 신규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있고, 원산지 증명서 관련 애로사항 해소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동일한 애로사항이 계속 발생

(나) 조직·인사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

- ①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는 田실 ◎팀장 등 부서장급 직위 18개를 임의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본부와 소속기관 간 정원 대비 현원 배치 불균형이 계속 심화

- ② ◆관실 등 12개 부서가 특근매식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점심식대로 사용하는 등 시간 외 근무와 상관없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2,169회에 걸쳐 2억 769만여 원 (카드결제) 사용
- ③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면세사업자와 16건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73,543천여 원을 제외하지 않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락물자를 불법 수출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처분 기준을 정하여 공포하고, 행정처분기준 등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에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전략물자 불법 수출행위 관련 행정처분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와 「전략물자 불법수출행위 업무처리 내부지침」(2009. 11. 30. 제정, 이하 “전략물자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⁴⁾를 수출한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수입제한 및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등⁵⁾으로 정하되,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고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5)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시 등⁶⁾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0조 및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⁷⁾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부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게 수출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할 때에는 불법 수출규모나 횟수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처분기준에 없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처분을 임의로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행정처분기준 미공표

그런데 산업부는 2009. 11. 30. 불법 수출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출입제한 조치를 하고,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인 경우 등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도 이를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으로만 운용할 뿐 공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14. 1. 1.부터 2017. 2. 15. 사이에 총 87건의 수출제한

6)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7) 당사자 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2조)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근거로 「대외무역법」 제31조 등의 규정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행정처분 대상자는 「대외무역법」 제31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처분기준에 합당한 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나. 행정처분기준 임의 적용

전략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미화 100천 달러 미만의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자에게는 ‘15일간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처분을 하고,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2016. 1. 27. 미화 11천 달러 상당의 전략물자(열화상카메라)를 불법 수출한 ○○주식회사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이라는 감경요인에 따라 15일간의 수출제한 대신 10일간의 수출제한과 교육명령 처분을 한 반면, 2016. 3. 17. 주식회사 ◆◆(불법 수출금액 미화 11천 달러)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제한 처분없이 교육명령만 처분하는 등 [표 1]과 같이 동일한 불법수출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과 감경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행정처분하였다.

[표 1] 동일 행정처분기준 및 감경요인인데도 실제 처분이 달라진 사례

(단위: 미화, 천 달러)

처분일자	업체명	불법 수출금액	행정처분기준	감경요인	실제 처분내용
2014. 11. 14.	▲▲(주)	248	수출입제한 1개월	자진신고 및 우리나라 현지법인	교육명령
2015. 8. 5.	(주)▼▼	105			수출제한 15일, 교육명령
2015. 9. 30.	▽▽(주)	211			수출제한 15일, 교육명령
2016. 1. 27.	◎◎(주)	11	수출입제한 15일	우리나라 현지법인	수출제한 10일, 교육명령
2016. 3. 8.	(주)◁◁	54			교육명령
2016. 3. 17.	(주)◆◆	11			교육명령
2014. 8. 5.	▷▷(주)	113	수출입제한 1개월	자진신고	교육명령
2015. 2. 13.	(주)◀◀	122			수출제한 15일, 교육명령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산업부는 2016. 11. 16. 계 미화 760천 달러 상당의 전략물자(보안 소프트웨어)를 불법 수출한 ■■주식회사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이라는 감경요인 외에 규정에 없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한 행정처분기준인 수출제한 3개월 대신 수출제한 1개월로 감경처분하였다.

반면에 산업부는 2016. 12. 16. 주식회사 ◇◇(전략물자 ‘트리에탄올아민’을 미화 31,223달러에 수출)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우리나라 현지법인인 경우에 해당되어 수출입제한 대신 교육명령 처분이 가능한데도 수출제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유로 감경하지 않은 채 수출제한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표 2]와 같이 총 5건에 대하여 임의로 감경처분하거나 감경없이 행정처분하였다.

[표 2] 감경요인과 달리 임의로 감경처분한 명세

처분 기업명	처분일자	감경요인 적용 전 정당한 처분	실제 처분	산업부가 임의로 적용하거나 배제한 감경 요인
△△(유)	2014. 3. 7.	수출입제한 3개월	교육명령	수사기간 중 회사대표자 유고
(주)♀♀	2014. 3. 18.	수출입제한 3개월	수출제한 15일, 교육명령	모범 납세자
■■■(주)	2016. 11. 16.	수출입제한 3개월	수출제한 1개월, 교육명령	경영상 어려움
(주)☆☆	2016. 11. 28.	수출입제한 15일	수출제한 15일	우리나라 현지법인으로서 감경요인이 있으나, 수출제한 기간이 단기간이므로 미적용
(주)◇◇	2016. 12. 16.	수출입제한 15일	수출제한 15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산업부는 현행 전략물자 업무처리지침 내 불명확한 개념 등을 정비한 후 공표하여 앞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하면서도 전략물자 업무처리지침에 적시된 가중·감경 기준은 단지 대표적인 가중·감경요인을 규정한 것으로 위 기준에 적시되지 아니한 요인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기준은 명확하여야 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략물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1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동 기준 등에 따라 일관되게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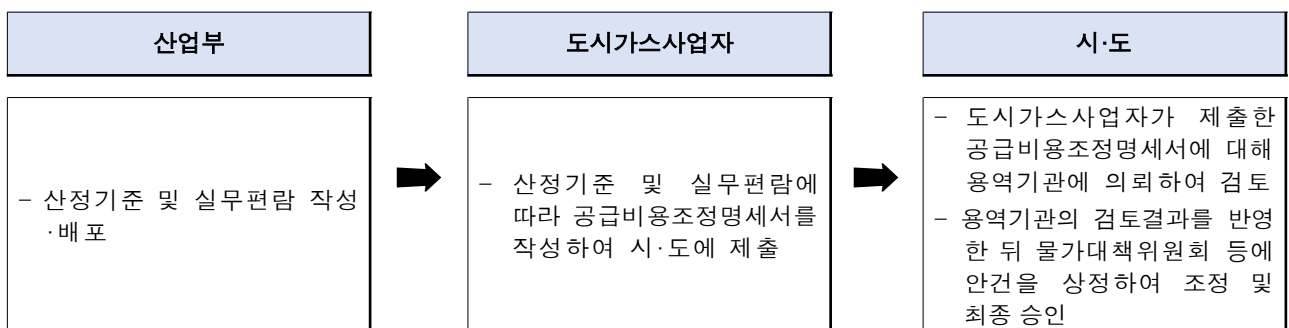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그림]과 같이 일반도시가스 요금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실무편람」(이하 “실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림] 도시가스 공급비용 승인 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산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총괄원가는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은 [표]와 같다.

[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

도시가스 공급비용 = 총괄원가(총공급비용) / 판매열량
○ 총괄원가(총공급비용)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 외 손익 + 법인세비용 ± 전년도 판매열량 차이 ○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 적정투자보수: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유·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수 ▪ 요금기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건설 중인 자산,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한 금액 ▪ 투자보수율: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투자한 금액(요금기저)에 대한 보상 성격의 이자율

자료: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재구성

그리고 산정기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 중인 자산의 기초·기말 평균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공급설비 투자비를 예상하여 요금기저⁸⁾ 및 적정원가⁹⁾에 반영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공급설비 설치

8)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공급설비 투자계획을 대입하여 순가동설비자산액 등을 산출

9) 과대(또는 과소)하게 반영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 비용

계획 취소 및 공급설비 굴착 불허 등의 사유로 공급비용에 반영된 공급설비 투자비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 및 시·도별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미집행된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13.~3. 31.)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16,935천 원¹⁰⁾ 상당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 등에 과다 반영되어 [별표] “시·도별 공급설비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총괄원가 차이 발생 명세”와 같이 총괄원가가 17,218,323천 원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

10) 258,816,935천 원(투자비 차액)=845,532,959천 원(공급비용에 반영된 투자비)-586,716,024천 원(실제 투자비)

【사례 및 산정방식】

- (사례) 경상북도는 관내 ♠♠ 등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비용 산정 시 도시가스 공급 설비 설치에 116,118,130천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실제 집행한 공급설비 투자비는 61,840,495천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3개년간 공급비용 산정 시 총괄원가 3,475,857천 원이 과다 반영된 것으로 확인
- (산정방식) 공급비용 산정 시 대입한 투자비 116,118,130천 원 대신 실제 집행한 투자비 61,840,495천 원을 대입하여 산출된 차액 54,277,635천 원을 공급비용 산정산식에 대입
- 공급비용 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적정원가 1,802,061천 원과 적정투자보수 1,673,796천 원을 합산하여 총괄원가 3,475,857천 원을 산출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에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¹¹⁾는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비용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집행하지 못한 공급설비 투자비를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하는 등으로 공급비용을 조정하여 승인하고 있다.

그 결과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 상당액을 정산하지 않는 위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계 17,218,323천 원¹²⁾ 상당액¹³⁾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각 시·도지사가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달리하고 있고 용역기관이 검증한 공급비용을 조

1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12) 전체 용도 수요자(2015년 12월 말 기준 6,315,140수요자, 가정용 수요자는 전체 용도 수요자의 96.1%)의 1수요자당 연평균 추가 부담 금액이 910원으로 추정됨

13) 각 시·도가 용역기관이 검증한 공급비용을 물가대책위원회 등에서 일부 조정하고 있어 산출금액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정하여 공급비용을 승인하기 때문에 투자비 차액에 따른 정확한 총괄원가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향후 시·도별 공급비용 산정내역을 검토하여 시·도로 하여금 미집행된 공급설비 투자비를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 수요자가 투자되지 않은 도시가스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시·도별 공급설비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총괄원가 차이 발생 명세

(단위: 천 원)

시·도명	도시가스 사업자명	공급비용에 반영된 투자비 (A)	실제 집행한 투자비 (B)	투자비 차액 (C=A-B)	투자비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적정원가 (D)	투자비미집행에 따른정산대상 적정투자보수 (E)	투자비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총괄원가 (F=D+E)
대구	-	82,106,262	72,502,989	9,603,273	-336,643	-310,067	-646,710
광주	-	25,928,374	22,095,153	3,833,221	-128,159	-140,136	-268,295
대전	-	47,118,574	37,898,416	9,220,158	-302,415	-309,157	-611,572
울산	-	47,488,569	32,382,704	15,105,865	-498,203	-409,993	-908,196
세종	-	8,663,300	5,237,094	3,426,206	-115,691	-120,087	-235,778
강원	-	17,685,238	11,920,662	5,764,576	-185,988	-166,595	-352,583
	-	20,392,758	9,148,621	11,244,137	-376,482	-340,988	-717,470
	-	14,160,147	8,022,681	6,137,466	-190,553	-158,762	-349,315
	소계(3개사)	52,238,143	29,091,964	23,146,179	-753,023	-666,345	-1,419,368
충북	-	11,964,778	12,855,400	-890,622	18,575	15,656	34,231
	-	55,898,759	39,565,914	16,332,845	-567,148	-563,489	-1,130,637
	소계(2개사)	67,863,537	52,421,314	15,442,223	-548,573	-547,833	-1,096,406
충남	-	49,525,000	63,428,625	-13,903,625	161,983	171,975	333,958
	-	59,331,000	40,121,352	19,209,648	-350,769	-331,800	-682,569
	소계(2개사)	108,856,000	103,549,977	5,306,023	-188,786	-159,825	-348,611
전북	-	39,173,443	23,509,046	15,664,397	-627,162	-454,129	-1,081,291
	-	18,480,567	10,533,237	7,947,330	-231,202	-242,145	-473,347
	-	8,499,524	6,207,529	2,291,995	-98,128	-83,715	-181,843
	소계(3개사)	66,153,534	40,249,812	25,903,722	-956,492	-779,989	-1,736,481

시·도명	도시가스 사업자명	공급비용에 반영된 투자비 (A)	실제 집행한 투자비 (B)	투자비 차액 (C=A-B)	투자비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적정원가 (D)	투자비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적정투자보수 (E)	투자비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총괄원가 (F=D+E)
전남	-	19,981,544	2,813,596	17,167,948	-527,896	-589,453	-1,117,349
	-	15,663,073	6,494,006	9,169,067	-333,520	-305,189	-638,709
	-	24,959,307	11,420,156	13,539,151	-491,554	-496,936	-988,490
	-	35,317,174	18,994,809	16,322,365	-595,020	-653,208	-1,248,228
	소계(4개사)	95,921,098	39,722,567	56,198,531	-1,947,990	-2,044,786	-3,992,776
경북	-	23,565,407	14,969,984	8,595,423	-310,946	-265,909	-576,855
	♠♠	47,741,341	29,444,115	18,297,226	-671,982	-582,401	-1,254,383
	-	19,929,696	8,944,352	10,985,344	-378,606	-386,966	-765,572
	-	24,881,686	8,482,044	16,399,642	-440,527	-438,520	-879,047
	소계(4개사)	116,118,130	61,840,495	54,277,635	-1,802,061	-1,673,796	-3,475,857
경남	-	86,818,256	66,667,996	20,150,260	-768,268	-652,049	-1,420,317
	-	15,991,079	10,217,495	5,773,584	-209,737	-169,395	-379,132
	-	24,268,103	12,838,048	11,430,055	-391,492	-287,332	-678,824
	소계(3개사)	127,077,438	89,723,539	37,353,899	-1,369,497	-1,108,776	-2,478,273
계		845,532,959	586,716,024	258,816,935	-8,947,533	-8,270,790	-17,218,323

주: 1. '공급비용에 반영된 투자비' 및 '실제 집행한 투자비'는 당해연도 공급설비 투자비에서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을 제외한 금액

2.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적정원가' 및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정산대상 적정투자보수'는 '투자비 차액'을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3. 제주도는 2019년도 도시가스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제외

자료: 경상북도 등 12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및 관리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② 충청남도 ③ 예산군

조 치 기 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② 충청남도 ③ 예산군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¹⁴⁾(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입지비와 설비투자비 명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2011. 10. 17. 및 같은 해 10. 30. 충청남도로부터 ■■주식회사(대표이사 A, 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이라 한다)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공장을 충청남도 예산군 표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 후 같은 해 12. 19. 보조금 13,000백만 원¹⁵⁾을 교부결정하였다.

충청남도는 산업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12. 26. ●●과 ■■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도비 975백만 원을 교부결정하였고, 예산군은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자로서 같은 해 12. 28. 군비 2,275백만 원을 교부결정하였고, 2012. 1.

14)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구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 변경

15) ●● 7,000백만 원, ■■ 6,000백만 원

13. [표]와 같이 국비 등 보조금 계 13,000백만 원(전체 교부결정액의 80%)을 〇〇과 □□에 지원하였다.

[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

(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교부결정금액 (100%)				실제 교부금액 (80%)				지원조건(공장 전부 이전)		투 자 기 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계	16,250	13,000	975	2,275	13,000	10,400	780	1,820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2011. 11. 30.~ 2015. 6. 30. (2016. 6. 30.까 지 1년 연장)
〇〇	8,750	7,000	525	1,225	7,000	5,600	420	980			
□□	7,500	6,000	450	1,050	6,000	4,800	360	840			

주: 1. 당초 투자기간이 2015. 6. 30.까지였으나 2013년 9월 충청남도는 2016. 6. 30.까지 투자기간을 1년 연장 허가

2. 교부결정금액과 실제 교부금액의 차액인 3,250백만 원(20%)은 예산군이 보관

자료: 예산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12. 1. 4. 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설서」(2016년 11월 산업부)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을 지방으로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전부 이전의 의미는 기업이 종전 소재지의 공장, 본

사, 연구소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종전의 사업 등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위 수도권 소재 공장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공장의 전부 이전 이외에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하더라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10. 1. 4.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 이내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지방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국비지원한도 60억 원을 초과하여 70억 원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충청남도는 2009. 10. 21. 표단지 계획 승인 시 〇〇의 공장시설 중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합성공장(2개동) 및 연구실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충청남도가 2011. 7. 11. 고시한 「표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 7-2호)에 따르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업종 등은 표단지 입주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〇〇은 2011년 10월 예산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보조

금 신청서에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표기하였고, 의약품 이외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합성공장에서 제조하는 원료의약품도 함께 생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산업부, 충청남도 및 예산군은 ○○ 및 ■■가 표단지로 공장 등을 전부 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업무 부적정

예산군(○과 ●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 담당자 L은 2011년 10월 ○○으로부터 공장을 전부 이전하겠다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의 일부 공장이 표단지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0. 27. 충청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변경신청”¹⁶⁾ 문서를 기안하여 산업단지조성담당 C에게 결재를 상신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담당 C는 ○○으로부터 표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합성공장은 표단지로부터 1km 떨어진 예산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만 듣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이전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담당자 L이 기안하여 결재상신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변경신청”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였고, 이후 과장(D, 현 퇴직) 및 부군수(E 대결, 현 퇴직)의 결재를 받아

16) 예산군이 2011. 9. 30. 충청남도에 제출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신청”과의 보조금 금액 차이만 있음

2011. 10. 27. 충청남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실 ☉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 담당자 F은 2011. 10. 27. 예산군이 제출한 ○○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교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의 일부 공장은 입주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1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문서를 기안하여 기업유치담당 G(현 퇴직)의 결재(대결)를 받아 2011. 10. 28. 산업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19. 승인을 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기존 공장을 교단지로 전부 이전할 수 없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 보조금 8,750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13.~3. 31.) 중 확인한 결과 ○○의 경우 4년 이내에 1,000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국비 등 70억 원을 지원받고도 투자기간(2016. 6. 30.까지)이 만료된 2017년 3월 현재 당초 투자계획한 1,580억 원 중 356억 원(22.5%)만 투자하여 지원시설¹⁷⁾ 건축공사만 완료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공장 6개동 중 합성공장 2개동과 항생제 공장 2개동은 교차오염 우려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어서 교단지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은 투자기간 중인 2015년 12월 15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안산시

17) 2016년 11월 준공, 직원식당, 회의장, 샤워실, 전기·통신시설 등이 있는 건물

소재 기존 공장부지에 항생제인 페니실린 제재 전용 공장을 새로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는 당초 투자계획한 800억 원 중 141억 원(17.6%)만 투자하여 이전 지원대상이 아닌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공장 2개동은 이전하지 않고 있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예산군은 ○○의 이전 지원대상 일부 공장이 포단지에 입주할 수 없고, 기존 공장부지에 신규 공장이 준공·운영되고 있는 등 ○○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2014. 10. 8., 2015. 12. 10. 및 2016. 12. 13. 3차례에 걸쳐 ○○에 투자이행을 촉구한 채 이미 지급한 보조금 계 7,000백만 원(국비 5,600백만 원, 도비 420백만 원, 군비 980백만 원)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예산군은 2016. 1. 15. ○○과 ■■로부터 투자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공장 등을 실제 이전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충청남도에 수차례 투자기간 연장요청만 하였고, 충청남도는 2016. 8. 19.부터 산업부와 투자기간 연장 여부를 협의해 오다가 2016. 12. 28. 산업부에 투자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산업부는 2016. 8. 31. 포단지 공사현장을 방문하고도 ■■가 이전 지원대상이 아닌 물류센터만 건립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2017. 1. 6. ○○과 ■■가 토지 매입 후 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은 점은 의무불이행으로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차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하였

다.

그 결과 ㉠과 ㉡에 지원한 국비 등 보조금 계 16,250백만 원이 지방으로의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라는 보조금 지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예산군은 교단지계획 승인시점(2009년 10월)과 보조금 신청시점(2011년 10월) 사이에 2년의 차이가 있어 ㉠ 합성공장의 이전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7. 4. 4. ㉠에 보조금환수절차 진행계획을 통보하였고, 앞으로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는 교단지 내에 업종에 따른 구분이 아닌 제품 중 일부 품목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므로 전부 이전 가능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반려하기에는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의 경우 산업부의 투자기간 연장에 대한 불승인 결정(2017. 3. 27.)을 예산군에 통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 경우 기업의 이전 의지 및 산업부의 재검토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기간 연장 신청 또는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부는 ① ㉠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7. 3. 17.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같은 해 3. 27. 충청남도에 보조금 환수조치 명령을 하였고, ② ㉡에 대해서는 2018. 12. 31.까지 투자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장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지만, ㉠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부 이전 가능성 및 투자이행 지연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할 기

회를 제공한 후 환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식회사에 대해서 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보조금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장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충청남도지사는

- ① 앞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전부 이전할 수 없는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자격 검토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예산군수는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4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에 교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계 7,000,000,000원을 환수조치하고
- ② 앞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전부 이전할 수 없는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자격 검토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비관세장벽 과제 선정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요인인 통관, 표준·인증 및 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 등과 비관세장벽협의회¹⁸⁾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산업부는 중점관리과제(48개)와 현장애로과제(30개)로 관리하고 있던 비관세장벽 과제를 2016. 6. 30. 개최된 제7차 통상추진위원회¹⁹⁾에서 “ㄷ” 등 50개 과제로 통합 선정하고,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대응활동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등 비관세장벽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16년 4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213건의 비관세장벽 사례를 신규로 발굴하여 산업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2017년 2월

18) 2013년 11월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며 정부부처와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 등 40여개기관으로 구성된 비관세장벽 대응 전문 민관공동협의체

19) 2013.9.24.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고,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상교섭·조약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비롯한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을 논의

관련 부처에 상대국의 통상관련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 등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산업부는 213건의 신규 발굴 비관세장벽 사례 중 전문가 등의 검토결과 정부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비관세장벽 과제로 선정하여 소관 부처를 정하고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등 이행 현황을 관리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 이후 기업애로사항 해소 여부 등 이행결과도 함께 점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산업부는 위 213건의 신규 발굴 비관세장벽 사례가 [표 1]과 같이 기존 비관세장벽 과제와 유형이 유사한데도 비관세장벽 과제 채택 여부는 소관 부처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에 비관세장벽 과제로 등재하지 않고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²⁰⁾

[표 1] 비관세장벽 과제 유형(2017년 3월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TBT ¹⁾	SPS ²⁾	SPS/TBT	통관	지적재산권	투자	수입제한	기타
비관세장벽 과제	48	18	6	-	9	2	3	2	8
신규 발굴 비관세장벽 사례	213	46	18	8	37	-	43	23	38

주: 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2. 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검역기준

자료: 산업통상자부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위 213건의 신규 발굴 비관세장벽 사례 중 2015년 이전에 확인한 장기 미해결 사례(104건)를 살펴보면 전문가의 검토결과 [표 2]와 같이 상대국의 조치가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례

20)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여야 할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소관 부처 등과의 협조를 거쳐 해결

가 33건에 달하였고, 국제규범 위반이 아니더라도 정부 간 협상이나 비관세장벽 조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통하여 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표 2] 장기 미해결 사례 중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

(단위: 건)

구분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 단계							미위반	합계
	계	1단계	2단계	1, 2, 3단계	1, 2단계	1, 3단계	2, 3단계		
건수	33	7	18	1	1	3	3	71	104

주: 1. 1단계: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 큼, 2단계: 위반 가능성 있음, 3단계: 위반 아님

2. 하나의 비관세장벽 사례에 여러 규범 위반 및 미위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 [사례 1] 규정 위반 가능성: ‘ㄹ(2014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례 2] 규범 위반은 아니나, 정부 간 협상이나 기업지원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사례: ‘ㄴ(2015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ㄴ”의 경우 정부 대응조치 이후 원산지 증명서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는지를 점검하지 않은 채 “ㄷ”(2015년 9월), “ㅇ”(2016년 3월) 등의 대응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2016. 6. 30. 제7차 통상추진위원회에 비관세장벽 해결 사례로 보고하고 비관세장벽 과제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우우에서 서명권자 상이 등으로 인한 원산지 증명서 거부 사례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애로사항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소관 부처의 대응 조치 이후에도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 3] 서명권자 상이, 전자서명 등 FTA 원산지 증명서 통관 애로사항 발생사례

(단위: 건)

구분	♀♀	♂♂	♣♣	♥♥	♦♦	☒☒	☒☒	계
2016년 1~ 6월	8	2	3	2	3	1	1	20
2016년 7~12월	5	4	1	1	-	1	-	12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신규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부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의 대응 실적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비관세장벽 개선·해소로 완료 처리된 과제에 대해서도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시 애로사항 해소 여부를 일정기간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발굴 비관세장벽 사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과제로 선정한 후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장벽 대응조치 이후에도 일정기간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정책연구용역 계약 및 관리 불철저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ㄱ” 등 358건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²¹⁾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불철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2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 등을 국가기관·공공기관·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정책연구용역을 입찰할 때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하는 등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가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더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업부는 2014. 4. 23. “ㄱ”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정가격 85,000,000원으로 입찰공고하고도 같은 해 6. 25. 면세사업자인 사단법인 ●●(대표자 H)와 계약을 체결(금액 85,000,000원)하면서 부가가치세 가액 7,727,273원을 제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1]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명세”와 같이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총 16건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808,976,805원)하면서 부가가치세 가액 73,543,346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산업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정당 계약금액 735,433,459원보다 부가가치세 가액 계 73,543,346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

나. 정책연구용역 관리 불철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2016. 6. 29. 산업부 훈령 제99호) 제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체결 내용 및 연구결과 등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²²⁾하도록 되어 있

22) 「행정업무운영편람」(행정자치부) 제4절 제8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으며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표]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계약체결한 정책연구 용역 총 358건 중 76건(19.7%)의 정책연구결과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표] 정책연구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등록 현황(2017. 3. 31.기준)

(단위: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합 계		116		128		114		358	
등록 (비율)	공개	90	63	95	60	97	53	282	176
	비공개	(77.6%)	27	(74.8%)	35	(85.1%)	44	(80.3%)	106
미등록 (비율)		26 (22.4%)		33 (25.2%)		17 (14.9%)		76 (19.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산업부는 [별표 2]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정책연구결과 명세”와 같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비공개로 등록한 총 27건(2014년 등록)의 정책연구결과 중 21건(77.8%)의 경우 비공개 기간이 경과하였는에도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정책연구용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연구결과가 일반 국민 및 다른 부처와 공동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를 연구결과 평가 직후 공개하도록 규정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가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앞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연구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명세

(단위: 원)

연번	용역명	계약 상대자	계약일 (공고일)	공고금액	계약금액 (A)	정당 계약금액 (B)	추가 지급된 부가가치세 가액 (C=A-B)
1	-	-	2014. 5. 26. (2014. 4. 16.)	30,000,000	30,000,000	27,272,727	2,727,273
2	-	-	2014. 5. 30. (2014. 5. 12.)	40,000,000	40,000,000	36,363,636	3,636,364
3	-	-	2014. 5. 30. (2014. 5. 12.)	35,000,000	35,000,000	31,818,182	3,181,818
4	-	-	2014. 6. 3. (2014. 5. 16.)	80,000,000	78,400,000	71,272,727	7,127,273
5	ㄱ	●●	2014. 6. 25. (2014. 4. 23.)	85,000,000	85,000,000	77,272,727	7,727,273
6	-	-	2014. 7. 14. (2014. 6. 5.)	50,000,000	48,976,805	44,524,368	4,452,437
7	-	-	2014. 8. 19. (2014. 7. 1.)	40,000,000	38,000,000	34,545,455	3,454,545
8	-	-	2014. 9. 19. (2014. 8. 11.)	40,000,000	39,600,000	36,000,000	3,600,000
9	-	-	2014. 9. 25. (2014. 7. 17.)	80,000,000	80,000,000	72,727,273	7,272,727
10	-	-	2014. 12. 16. (2014. 12. 2.)	40,000,000	40,000,000	36,363,636	3,636,364
11	-	-	2014. 12. 18. (2014. 11. 4.)	60,000,000	60,000,000	54,545,455	5,454,545
12	-	-	2015. 2. 11. (2015. 1. 19.)	50,000,000	49,000,000	44,545,455	4,454,545

연번	용역명	계약 상대자	계약일 (공고일)	공고금액	계약금액 (A)	정당 계약금액 (B)	추가 지급된 부가가치세 가액 (C=A-B)
13	-	-	2015. 7. 16. (2015. 5. 20.)	35,000,000	35,000,000	31,818,182	3,181,818
14	-	-	2015. 8. 26. (2015. 7. 29.)	30,000,000	30,000,000	27,272,727	2,727,273
15	-	-	2015. 9. 14. (2015. 7. 8.)	40,000,000	40,000,000	36,363,636	3,636,364
16	ㄴ	㉞㉞	2015. 12. 29. (2015. 12. 4.)	140,000,000	80,000,000 ^{주)}	72,727,273	7,272,727
계 16건				875,000,000	808,976,805	735,433,459	73,543,346

주: “ㄴ” 용역의 경우 총계약금액(140,000,000원) 중 ㉞㉞과 체결한 계약금액은 80,000,000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정책연구결과 명세(2017. 3. 31. 기준)

연번	용역명	용역 시작일	용역 종료일	비공개 기한
1	-	2014. 12. 12.	2015. 2. 11.	2016. 12. 15.
2	-	2014. 10. 20.	2015. 3. 14.	2016. 10. 20.
3	-	2014. 11. 13.	2014. 12. 20.	2016. 12. 9.
4	-	2014. 9. 22.	2014. 12. 21.	2016. 12. 31.
5	-	2014. 8. 7.	2015. 4. 6.	2016. 8. 7.
6	-	2014. 12. 22.	2015. 5. 29.	2017. 2. 9.
7	-	2014. 10. 20.	2015. 2. 25.	2016. 10. 20.
8	-	2014. 12. 1.	2015. 2. 28.	2016. 12. 17.
9	-	2014. 12. 2.	2015. 1. 31.	2016. 12. 17.
10	-	2014. 5. 30.	2014. 10. 31.	2016. 6. 14.
11	-	2014. 11. 28.	2015. 4. 27.	2016. 12. 16.
12	-	2014. 9. 30.	2015. 1. 24.	2016. 9. 30.
13	-	2014. 9. 3.	2014. 11. 2.	2016. 11. 26.
14	-	2014. 3. 24.	2014. 6. 23.	2016. 4. 8.
15	-	2014. 12. 12.	2015. 2. 11.	2016. 12. 14.
16	-	2014. 7. 22.	2014. 12. 30.	2016. 7. 20.
17	-	2014. 12. 24.	2015. 3. 31.	2016. 12. 21.
18	-	2014. 5. 30.	2014. 8. 29.	2016. 6. 14.
19	-	2014. 8. 6.	2014. 12. 5.	2016. 8. 5.
20	-	2014. 8. 20.	2014. 12. 9.	2016. 8. 19.
21	-	2014. 7. 15.	2014. 11. 30.	2016. 7. 1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불철저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구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2013. 2. 18. 주식회사 $\phi\phi^{23)}$ (대표이사 I, 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포천 π 단지 및 $\gamma\gamma$ 단지(이하 “공급구역”이라 한다) 내 55개 업체²⁴⁾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집단에너지사업(변경사업기간: 허가일~2018년 3월, 이하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공급구역 내 무허가 염색공장 난립 및 환경설비가 미흡한 소규모 산업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업체의 보일러를 폐쇄하고, 열(증기)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1. 9. 7. 포천시가 사업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나

23) 당초 사업자는 $\triangle\triangle$ (주)였으나 2015. 3. 2. (주) $\phi\phi$ 으로 최종 변경

24) π 단지 36개 업체, $\gamma\gamma$ 단지 19개 업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부는 2014. 1. 28.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정상가동과 함께 공급구역 내 기존의 대기배출시설을 모두 폐쇄하도록 경기도,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산업부는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시설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공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도록 하거나 직접 경기도 및 포천시와 협의하여 대기배출시설 폐쇄 및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산업부가 2015. 11. 6.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을 인가²⁵⁾한 후 같은 해 12. 2.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는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

25) 2015. 10. 2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승인

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와 포천시와 협의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산업부(☐실 ○관 ⊗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담당자 J은 사업자로 하여금 경기도와 포천시와 공급구역 내 대기배출시설 폐쇄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거나 직접 경기도와 포천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하거나 공급구역 내 대기배출시설 폐쇄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포천집 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2015. 12. 3. 그대로 환경부에 통보²⁶⁾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2015. 12. 31. 공급구역 내에 있는 ☆☆(대표자 K)가 보일러²⁷⁾ 용량을 증설(0.5톤/hr→15.6톤/hr)하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²⁸⁾하자 2016. 1. 6. 그대로 허가하였다.

그 결과 공급구역 내에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이 신규로 허가되어 기존의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증설 등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산업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고,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그

26) 본인 전결로 처리

27) 폐기물을 재활용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설

28) ☆☆는 열공급시설을 증설하여 사업장 내에 열을 공급하고, (주)☐☐는 11단지 내 열 공급 후 여열을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여 입주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승인기관의 장에게도 있으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부서장급 직위 운영 및 정·현원 관리 등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과장’ 등 부서장급 직위를 설치·운영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사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4조, 제4조의2 및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기관 직제규정 및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내부직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법령상 근거 없는 부서장급 직위 설치·운영

「정부조직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과장’이나 ‘팀장’ 등 보조기관의 설치
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제규정 및 직제 시행규칙에 산업부의 하부
조직 및 부서장급 보조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직제규정 등에 근거가 없을 경우 ‘팀장’과 같은 부서장급 직위를 설치·운
영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2017년 3월 현재 법령상 설치 근거도 없이 [표 1]과 같이
◎팀장 등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부서장급 직위²⁹⁾ 18개를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표 1] 팀장 직위를 임의 설치·운영한 현황

소속	직위명	비고	소속	직위명	비고
田실	◎팀장	'09년 5월 직제규정 개정 시 비직제화	▽ 단	●팀장	'13년 3월 직제개편 이전부터 비직제팀으 로 임의 설치·운영
田관	㉿팀장	'13년 3월 직제규정 개정 시 비직제화		⊠팀장	
⊠실	△팀장	'14년 11월 임의 설치		⊠팀장	
⦿실	⬢팀장	'14년부터 '15년 8월 사이에 임의 설치		☺팀장	
	⬤팀장			☺팀장	
	⊗팀장			☼팀장	
✱실	◎팀장	▭ 과		⚙팀장	
田실	㉿팀장		▩팀장		
	△팀장		▨팀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단의 경우 직제 시행규칙에 부이사관(3급)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

29) ◎팀, ㉿팀, ●팀, ⊠팀, ⦿팀, 팀 등 6개 팀장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 시 과장급 그룹에 포함시켜 관리
하였고, 실제 보조기관에 준하여 18개 팀장에게 직책수행경비 지급

은데도 법령상 근거 없는 ●팀장을 설치하고 부이사관(3급)으로 배치·운용하고 있었다.

나. 본부 및 소속기관 정·현원 관리 부적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고,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의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 제품안전 및 시험인증 등에 관한 총괄기관으로 2010년 이후 시험·분석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고 범부처 인증 관리, 국가표준의 총괄관리 체계 도입 및 기술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하는 등³⁰⁾ 기관의 업무가 집행기능에서 정책총괄기능 위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은 총 218명이나 현원은 177.5명으로 40.5명이 부족(결원을 18.6%)한 상태이고, 특히 4·5급 및 5급 인력의 경우 정원 대비 72%(정원 93명 중 현원 67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³¹⁾

따라서 산업부는 상위직급의 결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을 배치할 때에는 결

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의 주기능 변화를 살펴보면 2006. 6. 12. 개정 시 시험·분석 업무를 관련 민간기관에 이양하고 국가표준과 제품안전 정책기능 강화, 2010. 10. 27. 개정 시 적합성 정책국을 신설하여 국가표준 총괄관리 및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추진, 2013. 12. 12. 개정 시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뀜

31) 최근 3년간 산업부 일반직 5급의 평균 퇴직률은 3.8%인 반면 국가기술표준원 5급(연구관 포함)의 평균퇴직률은 23.6%에 달함

원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소속기관의 업무량·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정원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직제 시행규칙에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도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의 승진임용을 통합하여 실시한다는 사유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급 및 5급으로 총 169명을 승진임용하면서 본부 승진인원의 68.2% (본부 승진인원 145명 중 99명)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의 결원으로 승진시킨 후 본부에 그대로 배치하였다.

그 결과 산업부 본부는 지속적인 정원 증가³²⁾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반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표 2]와 같이 4·5급 및 5급 직급자를 2016년 정원(93명)의 64.5%인 60명만 배치하는 등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국가기술표준원 연도별 4·5급 및 5급 결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원 ^{주)} (A)	92	89	90	92	93
현원(B)	74	75	72	64	60
결원(C=A-B) (결원율=C/A×100)	18 (19.5)	14 (15.7)	18 (20.0)	28 (30.4)	33 (35.5)

주: 행정·기술직 및 연구직 포함(직위승진한 과장급 연구관은 제외)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출자료 재구성

32) 2010년 751명, 2012년 797명, 2014년 829명, 2015년 849명, 2017년 859명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업무량 및 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 운영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직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정원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소속기관(특히 국가기술표준원)의 결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직위는 조속히 해소하고, 인력 운영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현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 불철저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특근매식비 예산 1,519,920,320원(2015년 713,074,650원, 2016년 806,845,670원)을 집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Ⅲ-1-5.의 규정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단가(6,000원, 1식 기준) 이내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직원이 2시간 이상 특근한 경우에만 매식 비용을 집행하도록 특근매식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13.~3. 31.) 중 산업부 8관 등 12개 부

서의 2015회계연도와 2016회계연도의 특근매식비 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표]와 같이 ㉠관 등 12개 부서는 특근매식비 집행액 계 995,801,180원 중 특근과 무관한 점심식사 및 간식비 등으로 2,169회에 걸쳐 207,694,410원을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집행하였다.

[표]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명세(2015. 1. 1. ~ 2016. 12. 31.)

(단위: 회, 원)

연번	부서명	특근매식비 집행액	부적정 집행 횟수 및 금액	
			횟수	금액
1	㉠관	115,931,530	441	29,768,000
2	㉡관	67,623,000	164	12,319,800
3	㉢관	85,896,460	190	21,961,710
4	田실	237,891,120	322	42,835,700
5	㉣관	110,330,110	403	35,073,990
6	㉤관	58,771,930	103	8,403,690
7	㉥관	34,997,300	63	14,278,700
8	㉦관	57,856,000	167	16,994,300
9	㉧단	42,239,110	141	8,033,350
10	㉨국	59,474,640	31	5,822,670
11	㉩관	66,827,080	45	5,257,700
12	㉪관	57,962,900	99	6,944,800
계		995,801,180	2,169	207,694,4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앞으로 특근매식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앞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규정과 다르게 특근매식비를 점심식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특근매식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불철저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소속 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자문 등을 할 경우 그 대가 등을 신고하게 하는 등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소속 직원이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13.~3. 31.) 중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산업부 본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수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 ◆국 ●과 M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1건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1,050,000원의 대가를 받는 등 [별표]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83명이 사전 신고 없이 157건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계 42,178,400원의 대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및 행동강령 위반 사례 발생 시 해당자에 대한 주의 촉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나 자문 등을 수행한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나 자문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

(단위: 원)

성 명 (직위 또는 직급)	부 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1	-	2015. 5. 19.	자문	200,000
		2	-	2015. 6. 5.	자문	200,000
		3	-	2015. 8. 21.	자문	200,000
		4	-	2015. 9. 11.	자문	250,000
		소 계(4건)				850,000
-	-	5	-	2015. 6. 29.	강의	230,000
		소 계(1건)				230,000
-	-	6	-	2015. 7. 15.	평가	237,000
		소 계(1건)				237,000
-	-	7	-	2015. 12. 9.	자문	400,000
		소 계(1건)				400,000
-	-	8	-	2015. 9. 4.	발표 및 자문	300,000
			소 계(1건)			300,000
-	-	9	-	2015. 6. 18.	자문	250,000
		10	-	2015. 11. 13.	자문	200,000
		11	-	2015. 6. 2.	자문	215,000
		12	-	2015. 6. 23.	자문	215,000
		13	-	2015. 7. 22.	자문	215,000
		소 계(5건)				1,095,000

성 명 (직위 또는 직급)	부 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14	-	2015. 6. 23.	자문	700,000
		소 계(1건)				700,000
-	-	15	-	2014. 11. 24.	자문	300,000
		16	-	2015. 6. 9.	기고	300,000
		소 계(2건)				600,000
-	-	17	-	2015. 5. 19.	강의	250,000
		소 계(1건)				250,000
-	-	18	-	2015. 5. 16.	강의	150,000
		19	-	2015. 7. 16.	발표 및 토론	640,520
		20	-	2015. 11. 3.	발표 및 토론	478,000
		소 계(3건)				1,268,520
-	-	21	-	2015. 6. 10.	평가	150,000
		22	-	2015. 12. 11.	평가	150,000
		소 계(2건)				300,000
-	-	23	-	2015. 3. 24.	토론	200,000
		24	-	2015. 6. 12.	자문	200,000
		25	-	2015. 7. 20.	자문	300,000
		26	-	2015. 8. 26.	토론	200,000
		소 계(4건)				900,000
-	-	27	-	2015. 1. 24.	발표 및 평가	200,000
		28	-	2015. 4. 9.	강의	286,800
		소 계(2건)				486,800
-	-	29	-	2015. 10. 23.	자문	500,000
		소 계(1건)				500,000

성 명 (직위 또는 직급)	부 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30	-	2014. 9. 23.	토론	300,000
		소 계(1건)				300,000
-	-	31	-	2015. 11. 25.	토론	200,000
		32	-	2015. 11. 5.	자문	120,000
		소 계(2건)				320,000
-	-	33	-	2015. 8. 12.	심의	250,000
		소 계(1건)				250,000
-	-	34	-	2015. 10. 22.	강의	297,500
		소 계(1건)				297,500
-	-	35	-	2015. 12. 15.	기고	200,000
		소 계(1건)				200,000
-	-	36	-	2015. 5. 29.	평가	400,000
		소 계(1건)				400,000
-	-	37	-	2015. 12. 11.	토론	220,000
		소 계(1건)				220,000
-	-	38	-	2015. 12. 17.	발표	200,000
		소 계(1건)				200,000
-	-	39	-	2015. 5. 20.	기고	140,000
		40	-	2015. 9. 10.	평가	150,000
		소 계(2건)				290,000
-	-	41	-	2015. 9. 3.	평가	100,000
		42	-	2015. 10. 8.	평가	200,000
		43	-	2015. 11. 25.	평가	239,000
		소 계(3건)				539,000
-	-	44	-	2015. 3. 25.	평가	240,000
		소 계(1건)				240,000
-	-	45	-	2015. 4. 7.	평가	900,000
		소 계(1건)				900,000
-	-	46	-	2015. 10. 27.	자문	150,000
		소 계(1건)				150,000

성명 (직위 또는 직급)	부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47	-	2015. 12. 24.	토론, 자문	150,000
		소계(1건)				150,000
-	-	48	-	2015. 6. 11.	자문	500,000
		소계(1건)				500,000
-	-	49	-	2015. 8. 20.	평가	236,000
		50	-	2015. 11. 18.	기고	200,000
		51	-	2015. 12. 16.	기고	200,000
		소계(3건)				636,000
-	-	52	-	2015. 11. 19.	평가	357,000
		소계(1건)				357,000
-	-	53	-	2015. 7. 9.	강의	478,000
		소계(1건)				478,000
-	-	54	-	2015. 7. 29.	자문	150,000
		소계(1건)				150,000
-	-	55	-	2015. 6. 23.	강의	300,000
		소계(1건)				300,000
-	-	56	-	2015. 11. 26.	토론	300,000
		소계(1건)				300,000
-	-	57	-	2015. 11. 18.	기고	478,000
		소계(1건)				478,000
-	-	58	-	2015. 2. 13.	발표	200,000
		소계(1건)				200,000
-	-	59	-	2015. 9. 1.	강의	500,000
		60	-	2015. 5. 19.	강의	300,000
		소계(2건)				800,000
-	-	61	-	2015. 10. 15.	강의	300,000
		62	-	2015. 12. 1.	강의	300,000
		소계(2건)				600,000

성 명 (직위 또는 직급)	부 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63	-	2015. 12. 22.	기고	220,000
		64	-	2015. 6. 19.	강의 및 기고	400,000
		소 계(2건)				620,000
-	-	65	-	2015. 5. 21.	강의	120,000
		소 계(1건)				120,000
-	-	66	-	2014. 10. 20.	평가	300,000
		67	-	2014. 10. 20.	평가	300,000
		소 계(2건)				600,000
-	-	68	-	2015. 4. 28.	강의	478,000
		소 계(1건)				478,000
-	-	69	-	2015. 6. 30.	회의	286,800
		70	-	2015. 7. 2.	회의	200,000
		소 계(2건)				486,800
-	-	71	-	2015. 2. 11.	회의	150,000
		소 계(1건)				150,000
-	-	72	-	2015. 10. 12.	자문	150,000
		73	-	2015. 10. 21.	자문	150,000
		74	-	2015. 11. 2.	자문	150,000
		75	-	2015. 11. 5.	자문	150,000
		소 계(4건)				600,000
M	●과	76	-	2015. 1. 22.	토론, 자문	150,000
		77	-	2015. 2. 25.	자문	50,000
		78	-	2015. 3. 24.	자문	50,000
		79	-	2015. 4. 22.	자문	50,000
		80	-	2015. 5. 27.	토론, 자문	150,000
		81	-	2015. 6. 29.	자문	50,000
		82	-	2015. 7. 22.	자문	50,000
		83	-	2015. 8. 24.	토론, 자문	150,000
		84	-	2015. 9. 24.	자문	50,000
		85	-	2015. 10. 22.	토론, 자문	150,000
		86	-	2015. 11. 24.	토론, 자문	150,000
		소 계(11건)				1,050,000

성 명 (직위 또는 직급)	부 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87	-	2015. 11. 17.	심의	286,800
		88	-	2015. 12. 3.	심의	285,000
		소 계(2건)				571,800
-	-	89	-	2015. 10. 2.	강의	300,000
		90	-	2015년 연중	문제 출제	2,350,000
		소 계(2건)				2,650,000
-	-	91	-	2015. 9. 17.	평가	300,000
		소 계(1건)				300,000
-	-	92	-	2015. 4. 8.	간담회 참석	150,000
		93	-	2015. 7. 27.	심의	100,000
		94	-	2015. 7. 30.	심의	250,000
		95	-	2015. 10. 7.	심의	250,000
		96	-	2015. 11. 24.	심의	200,000
		소 계(5건)				950,000
-	-	97	-	2015. 3. 23.	토론	300,000
		소 계(1건)				300,000
-	-	98	-	2015. 7. 15.	기고	500,000
		소 계(1건)				500,000
-	-	99	-	2015. 4. 11.	자문	300,000
		100	-	2015. 6. 14.	자문	300,000
		소 계(2건)				600,000
-	-	101	-	2015. 10. 4.	강의	350,000
		소 계(1건)				350,000
-	-	102	-	2015. 1. 23.	평가	313,800
		103	-	2015. 3. 17.	평가	240,000
		104	-	2015. 4. 15.	평가	286,800
		105	-	2015. 11. 3.	평가	264,820
		106	-	2015. 11. 20.	평가	247,130
		107	-	2015. 12. 21.	평가	247,130
		소 계(6건)				1,599,680
-	-	108	-	2015. 6. 15.	기고	240,000
		소 계(1건)				240,000

성 명 (직위 또는 직급)	부 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109	-	2015. 10. 14.	심의	200,000
		110	-	2015. 8. 19.	심의	150,000
		111	-	2015. 9. 13.	기고	382,400
		소 계(3건)				732,400
-	-	112	-	2015. 3. 23.	강연	240,000
		113	-	2015. 6. 12.	포럼	300,000
		114	-	2015. 7. 10.	강의	300,000
		115	-	2015. 9. 11.	강의	350,000
		116	-	2015. 10. 15.	강연	366,100
		소 계(5건)				1,556,100
-	-	117	-	2015. 4. 11.	포럼	200,000
		118	-	2015. 1. 21.	강의	400,000
		소 계(2건)				600,000
-	-	119	-	2015. 12. 9.	자문	200,000
		소 계(1건)				200,000
-	-	120	-	2015. 2. 12.	기고	140,000
		121	-	2015. 8. 27.	기고	140,000
		122	-	2015. 10. 15.	기고	140,000
		소 계(3건)				420,000
-	-	123	-	2015. 1. 27.	회의 및 자문	150,000
		소 계(1건)				150,000
-	-	124	-	2015. 11. 19.	심의	200,000
		소 계(1건)				200,000
-	-	125	-	2015. 3. 25.	자문	100,000
		126	-	2015. 4. 7.	자문	100,000
		소 계(2건)				200,000
-	-	127	-	2015. 6. 30.	회의 및 자문	200,000
		소 계(1건)				200,000

성 명 (직위 또는 직급)	부 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128	-	2015(날짜 미상)	평가	340,800
		129	-	2015(날짜 미상)	발표	500,000
		130	-	2015(날짜 미상)	발표	600,000
		131	-	2015(날짜 미상)	평가	800,000
		소계(4건)				2,240,800
-	-	132	-	2015. 1. 23.	회의	150,000
		소 계(1건)				150,000
-	-	133	-	2015. 3. 17.	회의	150,000
		134	-	2015. 5. 27.	회의	150,000
		135	-	2015. 9. 16.	회의	150,000
		136	-	2015. 11. 10.	회의	150,000
		소 계(4건)				600,000
-	-	137	-	2015. 3. 17.	회의	150,000
		소 계(1건)				150,000
-	-	138	-	2015. 5. 14.	평가	420,000
		소 계(1건)				420,000
-	-	139	-	2015. 12. 10.	회의	200,000
		소 계(1건)				200,000
-	-	140	-	2015. 6. 3.	강의	250,000
		141	-	2015. 7. 21.	자문	250,000
		소 계(2건)				500,000
-	-	142	-	2015. 9. 2.	자문	200,000
		소 계(1건)				200,000
-	-	143	-	2015. 2. 26.	자문	200,000
		144	-	2015. 8. 25.	자문	200,000
		소 계(2건)				400,000
-	-	145	-	2015. 9. 5.	강의	300,000
		소 계(1건)				300,000
-	-	146	-	2015. 1. 13.	토론	250,000
		147	-	2015. 4. 1.	자문	150,000
		소 계(2건)				400,000

성 명 (직위 또는 직급)	부 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가금액
-	-	148	-	2015. 1. 27.	평가	250,000
		149	-	2015. 1. 29.	평가	300,000
		150	-	2015. 3. 31.	평가	400,000
		소 계(3건)				950,000
-	-	151	-	2015. 4. 2.	강의	300,000
		소 계(1건)				300,000
-	-	152	-	2015. 2. 24.	자문	150,000
		153	-	2015. 5. 7.	발표	300,000
		소 계(2건)				450,000
-	-	154	-	2015. 3. 4.	기고	210,000
		소 계(1건)				210,000
-	-	155	-	2015. 5. 12.	기고	160,000
		156	-	2015. 5. 20.	기고	200,000
		소 계(2건)				360,000
-	-	157	-	2015. 12. 21.	기고	550,000
		소 계(1건)				550,000
합 계(총 83명, 157건)						42,178,4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액기술료 징수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 치 기 관 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②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 전담기관³³⁾으로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17. 2.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 이하 “기술료 징수요령”이라 한다)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종료 후 영리기업인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³⁴⁾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기술료 징수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실시기업의 규모에 따른 비율³⁵⁾(이하 “기술료 징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표]와 같이 2012. 7. 1.

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

34) 징수한 기술료는 ‘산업기술혁신 및 사업화촉진 기금’에 수입으로 납입

35) 중소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20, 대기업 100분의 40

이전 체결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차협약에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 유리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기술료 징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 기술료 징수율 적용기준¹⁾

구분	2012. 7. 1. 이전 연차협약을 체결한 경우	2012. 7. 1. 이후 연차협약을 체결한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율 (기술료 징수요령 제9조)	- 주관기관규모에 따른 징수율(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을 모든 실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 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20%로 적용	각 실시기업 규모에 따라 징수율(대기업: 40%, 중견기업: 30%²⁾, 중소기업: 10%)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
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기술료 징수요령 부칙 제4조)	-	2012. 7. 1. 이후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 (단, 연차협약 또는 단체협약 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을 우선 적용)

주: 1. 2012. 7. 1. 기술료 징수요령이 개정되어 기술료 징수율 적용기준이 변경됨

2. 2016. 1. 1. 기술료 징수요령 개정으로 20%로 변경

자료: 기술료 징수요령 재구성

따라서 평가관리원과 기술진흥원은 2012. 7. 1.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할 때에는 개정된 기술료 징수요령에 따라 각 실시기업의 규모에 따른 기술료 징수율을 적용하고, 2012. 7. 1. 이전 체결된 연차협약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산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 유리한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협약 당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13.~3. 31.) 중 평가관리원과 기술진흥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징수한 기술료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2. 7. 1. 이후 체결된 연차협약에 대해서도 개정 전 기술료 징수요령을 적용하여 기술료를 과소 징수하거나, 2012. 7. 1. 이전 체결된 연차협약에 대해 개정 후 기술료 징수요령을 소급 적용하여 기술료를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

가. 평가관리원의 경우

평가관리원은 2011. 12. 1. 주식회사  (주관기관: 2012. 10. 1. 주식회사  으로 주관기관 변경) 및 주식회사  등 6개 참여기관에 정부출연금 5,381백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³⁶⁾”[과제명: ㄱ, 개발기간: 2011. 12. 1.~2015. 9. 30.]을 체결하고, 2016. 3. 2. 주식회사  등과 사업수행결과 성과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한 실시계약³⁷⁾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평가관리원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때에는 1년차 협약기간(2011. 12. 1.~2012. 9. 30.) 동안은 주관기관(주식회사 )의 규모(중소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649,832,647원)의 20%인 77,979,917원³⁸⁾을, 2년차 이후 협약기간(2012. 10. 1.~2015. 9. 30.) 동안은 실시기업(주식회사 )의 규모(대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1,741,188,457원)의 40%인 417,885,230원³⁹⁾, 계 495,865,147원을 기술료로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평가관리원은 주식회사  에 대해 2년차 협약기간 이후에도 1년차 협약기간의 기술료 징수율 20%를 적용하여 정당 기술료 495,865,147원보다 208,942,615원이 적은 286,922,532원만 징수하는 등 [별표 1] “정액기술료 과소 징수 명세”와 같이 총 16개 연구과제의 실시기업 중 19개 대기업에 대해 2012. 7. 1. 이전 연차협약 체결 당시 주관기관 기준으로 산정된 기술료 징수율을 이후 연차

36) 연구개발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매년 연차협약을 체결

37) 기술료 징수요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실시계약은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하도록 규정

38) 정부출연금에 기술료 징수율 20%를 곱한 금액인 129,966,529원에 기술료 징수요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 기납부 감경률 40% 적용

39) 정부출연금에 기술료 징수율 40%를 곱한 금액인 696,475,383원에 기술료 징수요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 기납부 감경률 40% 적용

에도 적용함으로써 기술료 계 712,498,598원을 과소 징수하였다.

반면 평가관리원은 “츠”(주관기관: 주식회사 ㄱㄱ, 개발기간: 2011. 9. 1.~2013. 8. 31.) 연구과제의 실시기업인 ●●주식회사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하면서, 1년차 협약기간(2011. 9. 1.~2012. 8. 31.)에 대해 주관기관 규모(중소기업)가 아닌 실시기업 규모(대기업)에 따른 기술료 징수율 40%를 적용하여 정당 기술료 27,266,852원보다 19,639,426원이 많은 46,906,278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2014. 3. 17. ●●주식회사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2] “정액기술료 과다 징수 명세”와 같이 총 4개 연구과제의 실시기업 중 4개 대기업에 대해 2012. 7. 1. 이전 연차협약 체결 당시 주관기관 기준으로 산정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 유리한데도 해당 연차에 대해 협약 당시 징수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시기업 규모에 따른 징수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술료 계 72,414,249원을 과다 징수하였다.

나. 기술진흥원의 경우

기술진흥원은 “트”(주관기관: ㄴㄴ주식회사, 개발기간: 2012. 6. 1.~2015. 4. 30.) 연구과제의 실시기업인 ★★주식회사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하면서, 2년차 협약기간 이후(2013. 5. 1.~2015. 4. 30.)에도 실시기업 규모(대기업)가 아닌 주관기관 규모(중소기업)에 따른 기술료 징수율 20%를 적용하여 정당 기술료 72,482,791원보다 50,236,382원이 적은 22,246,409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2016. 1. 23. ★★주식회사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1] “정액기술료 과소 징수 명세”와 같이 총 9개 연구과제의 실시기업 중 8개 대기업에 대해 2012. 7. 1. 이전 연차협약 체결 당시 주관기관 기준으로 산정된 기술료 징수율을 이후 연차에도 적용함으로써 기술료

계 370,198,141원을 과소 징수하였다.

반면 기술진흥원은 “ㄱ”(주관기관: 주식회사 ♡♡, 개발기간: 2012. 6. 1.~2015. 4. 30.) 연구과제의 실시기업인 주식회사 ☞☞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하면서, 1년차 협약기간(2012. 6. 1.~2013. 4. 30.)에 대해 주관기관 규모(중소기업)가 아닌 실시기업 규모(대기업)에 따른 기술료 징수율 40%를 적용하여 정당 기술료 46,940,434원보다 9,449,396원이 많은 56,389,83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2016. 3. 25. 주식회사 ☞☞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표 2] “정액기술료 과다 징수 명세”와 같이 총 11개 연구과제의 실시기업 중 9개 대기업에 대해 2012. 7. 1. 이전 연차협약 체결 당시 주관기관 기준으로 산정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 유리한데도 해당 연차에 대해 협약 당시 징수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시기업 규모에 따른 징수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술료 계 61,291,199원을 과다 징수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 등 24개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료 1,082,696,739원을 과소 징수하여 해당 금액만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수입으로 납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구재투자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식회사 등 13개 대기업으로부터는 기술료 133,705,448원을 과다 징수함으로써 실시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평가관리원과 기술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기술료 관련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술료 징수 업무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앞으로 정액
기술료 징수 기준을 위배하여 정액기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료 징수 업
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정액기술료 과소 징수 명세

(단위: 원)

기관명	연번	과제명	개발기간	주관기관	실시기업	정당 징수 기술료(A)	실제 징수액 (B)	차액 (A-B)
평가 관리원	1	ㄹ	2011. 12. 1. ~ 2015. 9. 30.	주식회사 ㄹ ㄹ	주식회사 ㄹ ㄹ	495,865,147	286,922,532	208,942,615
					주식회사 ㄹ ㄹ	48,962,937	27,476,752	21,486,185
					-	52,034,590	29,016,866	23,017,724
	2	-	2011. 12. 1. ~ 2013. 11. 30.	-	-	19,278,545	12,678,545	6,600,000
	3	-	2012. 6. 1. ~ 2014. 5. 31.	-	-	87,591,201	75,115,285	12,475,916
	4	-	2012. 6. 1. ~ 2014. 5. 31.	-	-	46,297,843	39,189,482	7,108,361
	5	-	2012. 6. 1. ~ 2014. 5. 31.	-	-	51,126,457	30,229,842	20,896,614
					-	7,891,973	5,183,343	2,708,630
	6	-	2012. 9. 1. ~ 2014. 8. 31.	-	-	11,533,189	5,766,594	5,766,595
	7	-	2012. 6. 1. ~ 2014. 5. 31.	-	-	16,076,132	12,207,593	3,868,539

기관명	연번	과제명	개발기간	주관기관	실시기업	정당 징수 기술료(A)	실제 징수액 (B)	차액 (A-B)
평가 관리원	8	-	2012. 6. 1. ~ 2015. 4. 30.	-	-	271,856,504	220,008,716	51,847,788
	9	-	2012. 6. 1. ~ 2015. 4. 30.	-	-	99,359,665	64,371,051	34,988,614
	10	-	2011. 12. 1. ~ 2015. 11. 30.	-	-	46,008,731	35,407,163	10,601,567
	11	-	2012. 6. 1. ~ 2015. 5. 31.	-	-	97,675,424	57,065,245	40,610,179
	12	-	2011. 6. 1. ~ 2014. 5. 31.	-	-	48,195,969	36,146,080	12,049,889
	13	-	2011. 7. 1. ~ 2014. 12. 31.	-	-	337,867,325	310,242,323	27,625,002
	14	-	2011. 7. 1. ~ 2014. 6. 30.	-	-	99,784,259	63,138,842	36,645,417
	15	-	2010. 11. 1. ~ 2013. 8. 31.	-	-	65,829,086	45,083,987	20,745,099
	16	-	2011. 7. 1. ~ 2014. 6. 30.	-	-	333,961,030	202,952,229	131,008,800
-					91,780,533	58,275,468	33,505,064	
평가관리원 소계					19개 기업 ¹⁾	2,328,976,540	1,616,477,938	712,498,598

기관명	연번	과제명	개발기간	주관기관	실시기업	정당 정수 기술료(A)	실제 정수액 (B)	차액 (A-B)
기술 진흥원	17	ㄷ	2012. 6. 1. ~ 2015. 4. 30.	주식회사	주식회사	72,482,791	22,246,409	50,236,382
	18	-	2012. 6. 1. ~ 2015. 4. 30.	-	-	54,762,282	32,934,997	21,827,285
	19	-	2011. 7. 1. ~ 2014. 4. 30.	-	-	165,362,021	152,931,565	12,430,456
	20	-	2011. 9. 1. ~ 2014. 8. 31.	-	-	53,072,330	31,936,160	21,136,170
	21	-	2011. 7. 1. ~ 2014. 4. 30.	-	-	136,406,588	68,203,290	68,203,298
	22	-	2011. 7. 1. ~ 2014. 4. 30.	-	-	145,540,449	72,770,225	72,770,224
	23	-	2011. 7. 1. ~ 2014. 4. 30.	-	-	55,164,576	38,403,080	16,761,496
					-	76,800,000	46,800,000	30,000,000
	24	-	2011. 7. 1. ~ 2014. 4. 30.	-	-	80,968,200	36,496,900	44,471,300
	25	-	2011. 7. 1. ~ 2014. 4. 30.	-	-	90,949,820	58,588,290	32,361,530
기술진흥원 소계					8개 기업 ²⁾	931,509,057	561,310,916	370,198,141
합 계					24개 기업 ³⁾	3,260,485,597	2,177,788,854	1,082,696,739

주: 1. 20개 기업 중 - 2개 과제 중복

2. 10개 기업 중 (주) 및 - 2개 과제 중복

3. 27개 기업 중 (주), - 및 - 중복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정액기술료 과다 징수 명세

(단위: 원)

기관명	연번	과제명	개발기간	주관기관	실시기업	정당 징수 기술료(A)	실제 징수액 (B)	차액 (B-A)
평가 관리원	1	ㄸ	2011. 9. 1. ~ 2013. 8. 31.	주식회사 ㅁㅁ	주식회사 ㉠	27,266,852	46,906,278	19,639,426
	2	-	2010. 11. 1. ~ 2014. 10. 31.	-	-	52,732,067	80,299,203	27,567,136
	3	-	2011. 12. 1. ~ 2014. 9. 30.	-	-	70,659,205	84,340,419	13,681,214
	4	-	2012. 6. 1. ~ 2014. 5. 31.	-	-	37,792,507	49,318,980	11,526,473
평가관리원 소계					4개 기업	188,450,631	260,864,880	72,414,249
기술 진흥원	5	ㅋ	2012. 6. 1. ~ 2015. 4. 30.	주식회사 ♡♡	주식회사 ㄱㄱ	46,940,434	56,389,830	9,449,396
	6	-	2012. 6. 1. ~ 2015. 4. 30.	-	-	56,421,392	69,063,265	12,641,873
	7	-	2012. 6. 1. ~ 2015. 4. 30.	-	-	30,932,657	40,930,800	9,998,143

기관명	연번	과제명	개발기간	주관기관	실시기업	정당 정수 기술료(A)	실제 정수액 (B)	차액 (B-A)
기술 진흥원	8	-	2012. 6. 1. ~ 2014. 4. 30.	-	-	5,770,884	7,471,870	1,700,986
	9	-	2012. 6. 1. ~ 2015. 4. 30.	-	-	38,270,238	49,031,040	10,760,802
	10	-	2012. 6. 1. ~ 2015. 4. 30.	-	-	1,270,578	2,058,150	787,572
	11	-	2012. 6. 1. ~ 2015. 4. 30.	-	-	325,152	644,300	319,148
	12	-	2012. 6. 1. ~ 2015. 4. 30.	-	-	51,997,327	57,257,140	5,259,813
	13	-	2012. 6. 1. ~ 2014. 4. 30.	-	-	17,997,384	23,994,768	5,997,384
	14	-	2011. 12. 1. ~ 2013. 11. 30.	-	-	26,804,690	31,115,400	4,310,710
	15	-	2012. 6. 1. ~ 2015. 4. 30.	-	-	1,445,385	1,510,757	65,372
기술진흥원 소계					9개 기업 ^{주)}	278,176,121	339,467,320	61,291,199
합계					13개 기업	466,626,752	600,332,200	133,705,448

주: 11개 기업 중 - 및 - 2개 과제 중복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